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14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9.

발 의 자: 김주영·주철현·오영환

이규민 · 김철민 · 이용우

용혜인 · 양정숙 · 서영교

장경태 · 김정호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 및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.

그런데 공공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미치고 있어 이를 공공 목적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공기업의 임원 구성 및 운영 요건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, 최
 근 5년 이내에 해당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
 람 등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(안 제20조제4항 신설).
- 나.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여성임원이 임원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직원 정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함(안 제24조의2제1항).
- 다.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한 사람이 1명이상 포함되도록 함(안 제25조제3항, 제26조제3항 및 제52조의7신설).
- 라.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 임명할 임원 수의 2배수 이상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함(안 제30조제5 항 신설).
- 마. 이사회에서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실질적인 직무의 수행이 불가 능하게 된 임원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의결한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중지함(안 제33조제4항 신설).
- 바. 기관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 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(안 제35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- 1. 해당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2.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
- 3.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해당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

제2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(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)은 1명 이상을 상임으로 하여야 한다.

제24조의2제1항 중 "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

위한"을 "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
- 2. 직원 정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

제25조제3항 전단 중 "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(국·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) 중에서"를 "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"로, "임명한다"를 "임명하되,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비상임이사 2인 이상을"을 "비상임이사를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공기업의 운영 및 공공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(국・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)
- 2. 1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(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
- ⑥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제3항 본문 중 "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, 기관규모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"를 "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,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
- 2. 1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
- ⑥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외부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제30조제3항 후단 중 "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"을 "대통령령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 임명할 임원 수의 2배수 이상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한다.

제33조의 제목 중 "보수기준"을 "보수기준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이사회에서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실질적인 직무의 수행이 불가

능하게 된 임원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의결한 경우 직무정지 기간 동안 해당 임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장은 기관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하여 그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5장에 제5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7(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) ① 기타공공기관이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공기업 및 준정부기업 등 임원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.

제25조, 제26조, 제29조, 제30조 및 제5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위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
제20조(위원회) ① ~ ③ (생	제20조(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				
략)	같음)				
<u> <신 설></u>	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			
	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회의				
	위원이 될 수 없다.				
	1. 해당 공기업・준정부기관의				
	<u>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</u>				
	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				
	하는 사람				
	2.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공기				
	업·준정부기관의 상근 임직				
	원이었던 사람				
	3.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				
	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				
	나 해당 공기업・준정부기관				
	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				
	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			
	<u>사람</u>				
<u>④·⑤</u> (생 략)	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				
	과 같음)				
제24조(임원) ① ~ ④ (생 략)	제24조(임원) ① ~ ④ (현행과				
	같음)				
⑤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	⑤				
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

제24조의2(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제) ① 공기업·준정 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 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하다.

② ~ ④ (생 략) 제25조(공기업 임원의 임면) ①· | 제25조(공기업 임원의 임면) ①· ② (생략)

③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 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 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(국·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

-----. 다만, 감 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 기업 및 준정부기관(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인 경우에 한정한다)은 1명 이 상을 상임으로 하여야 한다.

제24조의2(양성평등을 위한 임원

임명 목표제) ① ---------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 하여 여성 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-----

- 1.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 2. 직원 정원 중 여성인력이 차 지하는 비율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 - --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
·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이 임명한다.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 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④·⑤ (생 략) <신 설>

제26조(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) 제26조(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) ①·② (생 략)

다)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명하되,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--비상임이사를----

- 1. 공기업의 운영 및 공공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(국 · 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)
- 2. 1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 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 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추천이나 근로 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 람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- ⑥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①・② (현행과 같음)

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(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 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 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주 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.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 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 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 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 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 른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④·⑤ (생 략)

3
<u>다</u>
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
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,
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
<u>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</u> <u>이상 포함되어야 한다</u>

- 1.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
- 2. 1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
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
 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
 의 동의를 받은 사람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- 제29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~ ⑤ 저 (생 략)
 - 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·준 정부기관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 를 구성하며, 위원장은 외부위 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. <후 단 신설>

- ⑦·⑧ (생 략)
- 제30조(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) 저
 - ① · ② (생 략)
 -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·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. 이 경우

(3	제	3ઇ	네	叫	른	비건	상임	0],	사.	의
2	<u> き</u> え	<u>સ</u>	및	동	의	절	차외	- -	L	밖	에
Ž	필요	<u>)</u> र्]-	사	항은	<u>-</u>	대통	통령	령	<u>0</u>	로
7	정현	라디	<u>}.</u>								
세2	:9 <i>3</i>	돈(임육	원추	천	위원]회)	1	~	- (5
(현	행.	과	같유	을)						
Œ	3										
-											
-											
-											
_											
_								<u>c</u>)	경	우
<u>S</u>	리투	구우	원	은	다	강힌	분	o}0	ll 스	}	학
<u>ر</u> -	식고	4	경	험ㅇ	\\ \frac{9}{2}	등부	한	사림	<u>}</u>	중	에
<u>メ</u>	न	선	임경	하되	J	로	자대	班 5	의 -	추	<u>천</u>
<u>ر</u>	<u>)</u> =	받	은	사	람 o] 1	명	이것	<u>}</u>	포	함
5	티ㅇ	-) o	} ₹	한다	· <u>•</u>						
	7) •	8	3) (현	행과	- 겉	남음)				
d]3	103	돈('	임유	원후	!보기	자 -	추천		준	Ę	들)
		• (2					: 음)				
	3)										
-											
-											
-											
-											
_											

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 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 다.

④ (생략) <신 설>

제33조(임원의 보수기준) ① ~ ③ (생략) <신 설>

제35조(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) 제35조(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

----대통령
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 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 임 명할 임원 수의 2배수 이상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한다.
- 제33조(임원의 보수기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 - ④ 이사회에서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실질적인 직무의 수행 이 불가능하게 된 임원에 대하 여 직무정지를 의결한 경우 직 무정지 기간 동안 해당 임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.
 -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 - ④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장은 기관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 하여 그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에 대하여 손해

<신 설>

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제52조의7(기타공공기관의 비상 임이사 선임) ① 기타공공기관이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동의를 받은 사람이 1명 이상포함되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